

#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

외교부 영사서비스과

-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.4.13.(월)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.

##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

아·태(4)	△ 뉴질랜드 △ 말레이시아 △ 싱가포르 △ 태국
미주(18)	△ 바하마 △ 앤티가바부다 △ 아이티 △ 엘살바도르 △ 우루과이 △ 자메이카 △ 칠레 △ 코스타리카 △ 페루 △ 과테말라 △ 그레나다 △ 도미니카공화국 △ 브라질 △ 세인트루시아 △ 수리남 △ 콜롬비아 △ 트리니다드토바고 △ 파나마
유럽(29)	△ 불가리아 △ 이탈리아 △ 그리스 △ 네덜란드 △ 노르웨이 △ 덴마크 △ 독일 △ 라트비아 △ 러시아 △ 루마니아 △ 룩셈부르크 △ 리투아니아 △ 벨기에 △ 스웨덴 △ 스위스 △ 리히텐슈타인 △ 스페인 △ 슬로바키아 △ 아이슬란드 △ 에스토니아 △ 오스트리아 △ 체코 △ 카자흐스탄 △ 터키 △ 포르투갈 △ 폴란드 △ 프랑스 △ 핀란드 △ 헝가리
중동(4)	△ 모로코 △ 아랍에미리트 △ 이스라엘 △ 튀니지
아프리카(1)	△ 레소토

- 이에 따라, 2020.4.13.(월)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 사증(Visa)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

-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래 국가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해온바 있으나,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,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국가명(무사증 체류가능 기간)

- 터키(180일 중 90일), 카자흐스탄(180일 중 60일, 1회 연속 최대 30일), 튀니지(30일)

끝.